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] (2018.03.21 개정)

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

구 분		금 액
① 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		
해산 시 자기자본 총액	② 납입자본또는출자금액	
	③ 잉여금	
	④ 자기자본 총 액(②+③)	
⑤ 기 분 배 금 액		
⑥ 청 산 소 득 금 액(①－④+⑤)		

2. 해산의 경우

구 분			금 액
⑦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			
해산일 현재 잔여재산 의 가 액	⑧ 가산		
		계	
	⑨ 공제		
		계	
	⑩ 기 분 배 금 액		
	⑪ 차 감 재 산 가 액 (⑦ + ⑧ － ⑨ + ⑩)		
자기자본의 총 액	⑫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		
	⑬ 잉 여 금		
	⑭ 환 급 법 인 세		
	⑮ 계(⑫+⑬+⑭)		
⑯ 청 산 소 득 금 액(⑪－⑮)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① 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8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적습니다.

2. ⑤ 기분배금액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85조에 따라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.

3. ⑦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(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합니다)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.

4. ⑧ 가산란 및 ⑨ 공제란에는「법인세법」제7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적습니다.

5. ⑩ 기분배금액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85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.

6. ⑬ 잉여금란에는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(누계액)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 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적습니다.

7. ⑭ 환급법인세란에는 해산 후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를 적습니다.